

異議가 없으므로 釜山直轄市沙下區議會議員
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 條例案은 原案대로 可
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釜山直轄市沙下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 正條例案(區廳長提出)

(14時16分)

○委員長 金信祐 議事日程 第2項 沙下區地方
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條例案에 대하여 郭所得 總務課長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들겠습니다.

○總務課長 郭所得 總務課長 郭所得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改正理由를 말씀드리면 최근 國際化와
開放化 時代에 맞추어서 公務員의 個人的인 國
外旅行을 自律化하고 海外에 나가 있는 公務員의
服務에 관한 規定을 新設하는 等으로 現實에
알맞는 內容으로 改善 補完하려는 內容이 되겠
습니다.

主要骨子로는 現在 지방공무원복무조례 中에
는 年間 7日 以上の 年暇는 2回 以上으로 分割
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個人的으로
國外旅行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全 年暇日數를
使用할 수 있도록 하고 所屬 自治團體에서 旅
行申告制度를 廢止하는 內容으로서 여기에는 第
19條 第2項 및 第26條 第2項이 該當이 되겠
습니다.

다음에 地方公務員이 海外에 派遣勤務를 할
경우에는 國家公務員에 적용되는 在外公務員의
服務規定을 준용하도록 하고 在外公館長에게
派遣公務員의 복무감독권을 委託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으로서 여기에는 第10條 第3項을 新
設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昇進·轉職試驗 等に 應試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期間에 대하여 公暇를 許可

하도록 하는 內容으로서 여기에는 第22條 第4
號를 新設하는 內容이 되겠고 다음은 兄弟姊妹의
結婚時나 또는 兄弟姊妹 喪失부모의 死亡時 및
兄弟姊妹 脫喪時에 부여되던 特別休暇를 배우
자측의 형제자매 및 喪失부모의 경조사에도 동
시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으로서 이것은
別表3의 內容이 新設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參考事項으로서 公務員服務
規定에 大統領令으로서 지난5月6日에 第14262
號로 施行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地方自治
團體에도 自治에 맞는 條例로 바꾸고자 하는
內容으로 여기에 따라서 豫算措置는 별도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沙下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
例案

(끝에 실음)

○委員長 金信祐 에, 郭所得 總務課長 수고했
습니다.

다음은 沈玩澤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沈玩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
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 제안이유

공무원의 사적(私的)국외여행을 자율화하
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
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제9조 제2항 및 제26조의 2에서 연간 7일 이상 연가는 2회이상 분할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 국외여행할 경우 1회에도 전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제10조 제3항의 지방공무원이 외국에 파견할 경우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 제4호에는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필요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도록 하였고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배우자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부모에게도 적용토록 하였음.

3. 검토의견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국외 근무 파견시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에게 준용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양양 및 전문의 폭을 넓히려는 방안이고 또한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어 오던 국외 파견 공무원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에게 확대 실시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라고 사료됨.

○專門委員 沈玩澤 以上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信祐 沈玩澤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입니다.

本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申俊植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信祐 예

○申俊植委員 22條 公暇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필요한 기간」 이래 되어 있는데 승진이나 이런 것 할 때 승진시험, 그러니까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期間이 얼마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郭所得 그것은 여러가지 승진이라든가 시험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떨 때에는 1, 2次 試驗을 같은 날짜에 치는 그런 試驗도 있고 어떤 部署에서는 1次를 한 번 치고 그 다음날 2次를 치고 하는 部署가, 이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機關에서는 최소한의 날짜를 주는 것이 지금 관례로 되어 쓰고 있습니다.

○申俊植委員 여기에 期間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信祐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시니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는 이것으로 終結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討論順序입니다만 諒解해 주신다면 省略하고 바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討論을 省略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